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(허성무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575

발의연월일: 2025. 4. 3.

발 의 자: 허성무·김문수·서미화

김정호 · 김주영 · 양부남

김종민 · 김동아 · 문대림

오세희 의원(10인)

제안이유

우리나라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이전,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였으나, 2017년 이후 지방의 주력산업인 조선·자동차 산업 등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다시 전국적인 균형발전 불평등이 확대되고 있음.

2024년 기준 전국 288개 시·군·구 중 130개(57.0%) 시·군·구가 소멸위험지역으로 평가된 상황에서 지방소멸을 방지하고 지역의 혁신 성장 및 인구·소득 증대를 촉진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함.

이에 지방에 대규모 투자 유치가 가능한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가. 이 법은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(안 제1조).
- 나.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투자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지방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음(안 제5조 및 제6조).
- 다.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기회 발전특구 종합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함(안 제8조).
- 라.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·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회 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방 시대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지정할 수 있음(안 제9조).
- 마.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, 임시허가 및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원, 기회발전특구진흥재 단의 설립,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운영, 주택공급에 대한 특례, 부담 금 감면의 특례 등 종합적인 지원 규정을 마련함(안 제13조부터 제27조까지).

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법은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균 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- 1. "수도권"이란 「수도권정비계획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.
- 2. "지방"이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. 다만, 수도권 내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 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따른 접경지역 중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은 포함한다.
- 3. "지방투자"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 가. 수도권 중 시・군・구(자치구의 구를 말한다)별로 인구과밀・

산업입지·산업집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기업의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

- 나. 기업이 지방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것
- 4. "지방기업"이란 지방에 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.
- 5. "기회발전특구"란 개인 또는 법인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으로 제9조 및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3 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.
- 6. "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"이란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시행되는 산업단지개발사업, 택지개발사업, 관광단지조성사업, 도시개발사업, 지역개발사업, 도시환경정비사업,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.
- 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 특구의 발전과 기회발전특구 간의 연계·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- 제4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은 기회발전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지방투자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

- 제5조(지방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투자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투자에 소요되는 금액 중 토지매입가액의 일부, 설비투자금액의 일부 및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기준·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6조(지방기업에 대한 인력 양성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산업계·대학·연구기관 등 과 연계하여 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인력 양성 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장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등

- 제7조(기회발전특구의 조성·육성의 기본원칙) 기회발전특구의 조성 및 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.
 - 1. 지역산업발전을 위한 혁신산업의 생태계 구축
 - 2. 문화·교육·복지·보건의료 등이 복합적으로 갖추어진 정주환경 조성
 - 3. 혁신산업의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환경 조성

- 제8조(기회발전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기회발전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 종합발전계획(이하 "종합발전계획"이라 한다)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 - ② 종합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기회발전특구의 기본 목표 및 중장기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
 - 2. 기회발전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
 - 3. 기회발전특구의 운영 현황 및 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성과 평가결과와 사회적·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종합발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.
 -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의 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에게 종합발전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.
 -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62조에 따른 지방시대위원회(이하 "지

방시대위원회"라 한다)의 심의 ·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.

-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확정된 종합발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⑦ 그 밖에 종합발전계획의 수립・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(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신청 등) 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·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으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수도권 내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또는「접경지역 지원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시·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신청할 수 있다.
 - 1.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
 - 2. 「기업도시개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도시
 - 3. 「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심융합특구
 - 4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
 - 5.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 개발특구

- 6.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유무역지역
- 7.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15호에 따른 지역혁신융복합단지
- 8.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혁 신도시
- 9. 그 밖에 시·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지방투자를 하려는 기업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
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방시대 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국내외 충분한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가 가능할 것
- 2. 근로자 등의 정주 환경의 확보 또는 연계가 가능할 것
- 3.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에 필요한 부지와 광역교통망·정보통신망· 용수·전력 등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
- 4. 기회발전특구의 개발에 경제성이 있을 것
- 5. 기회발전특구가 있는 지역의 주요 산업과 연계 발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
- 6. 그 밖에 지방 혁신산업의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
- ④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

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(이하 "기회발전특구계획" 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- 1. 기회발전특구의 목적 · 명칭 · 위치 및 범위
- 2.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
- 3. 기회발전특구의 개발 및 관리 방법
- 4. 기회발전특구 내 산업의 육성 전략
- 5.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지원 계획
- 6. 기회발전특구 투자 등에 필요한 규제의 특례에 관한 사항
- 7.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·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지정 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심의・의결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있다. 이 경우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・도지사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-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·해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·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①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, 지정변경 및 지정해제의 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0조(기회발전특구의 지정 효과) ① 제9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의

지정 또는 변경지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기회발전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·수립·확정·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는 것으로 본다.

- 1. 「공공주택 특별법」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・변경
- 2.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 정 및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
- 3. 「도시개발법」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·변경
- 4. 「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승인,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·변경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혁신지 구의 지정·변경
- 5.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의2에 따른 도 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·변경
- 6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 업단지의 지정
- 7. 「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5조에 따른 투자선도지구 의 지정·변경
- 8. 「택지개발촉진법」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
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를 지정 또는

변경지정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
- ③ 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,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- 제11조(기회발전특구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) ① 시·도지사는 기회발 전특구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조성을 위하여 기회발전특구 개발사 업의 시행자 등으로 구성된 사업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사업협의체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은 시·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 - 1. 관계 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
 - 2.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
 - 3. 지역혁신 · 지역균형발전 · 산업 육성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
 - 4.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람
 - ③ 제1항에 따른 사업협의체의 구성・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
- 제12조(기회발전특구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) ①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호의 구역·특구·지구·단지·도시 등으로 지정·조성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.
 - 1.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

- 2. 「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 에 따른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
- 3. 「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3 호에 따른 기능지구의 지정
- 4.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 제11 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규 제자유특구의 지정
- 5. 「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」 제12조에 따른 경쟁력강화사업지구의 지정
- 6. 「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른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의 지정 및 제11조에 따른 드론시범사업구역의 지정
- 7. 「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조성
- 8.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 특구의 지정
- 9.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
- 10. 「지역문화진흥법」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의 지정
- 11.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에 따른 혁신도

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

- 12.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벤처기 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
- 13.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구역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의 지정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기회발전특구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31조에 따른 지역발전투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4장 기회발전특구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

- 제13조(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조세 특례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회 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및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.
- 제14조(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) ①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(이하"집합투자기구"라 한다)를 조성하려는 자는 출자금 총액, 출자지분비율, 존속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 - ② 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기회

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 등에 투자하여야 한다.

- 제15조(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을 위한 재정지원)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.
- 제16조(기회발전특구 내 연구개발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연구개 발하는 자의 제품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연구 자료를 제공하는 등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내용 및 절차·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7조(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지원) ① 정부는 기회발전특구를 지역에 적합한 혁신산업의 실험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기회 발전특구에 입주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, 실증 및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 - 1. 「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」
 - 2.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
 - 3. 「산업융합 촉진법」
 - 4. 「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」
 - 5. 「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」
 - 6. 그 밖에 「행정규제기본법」 제5조의2에 따라 우선허용·사후규 제 원칙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

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이 제1항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임시허가, 실증 및 규제 적용의 특례 등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른 기회발전특구진홍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기회발전특구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 터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기회발전특구규제샌드박스종합지원센터의 설치·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18조(기회발전특구진흥재단의 설립) ① 기회발전특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의 효율적·체계적 관리 및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기회발전특구진흥재단(이하 "재단"이라 한다)을 둘 수 있다.
 -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되,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 -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기회발전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
 - 2. 기회발전특구 내 산업단지 교육시설 주택단지 등의 조성 관리
 - 3. 기회발전특구 내 교육·문화·의료·정보통신·유통산업 등의 육 성·지원
 - 4.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 · 연구소 등 기관 투자유치 및 지원
 - 5. 기회발전특구 내 미래혁신산업의 사업화 촉진 지원
 - 6.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

- 7.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
- ④ 그 밖에 재단의 설립,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19조(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) ① 시·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에 입 주한 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기업종합지원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 - ② 기업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기회발전특구 내에 입주하는 중소·벤처기업 등에 대한 기술 지원
 - 2. 기회발전특구 내에 입주하는 산·학·연·관의 연계를 통한 공동 기술 개발
 - 3. 기회발전특구 내 과학·산업 기술 인력의 교육 및 훈련
 - 4. 기회발전특구 내 연구개발 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
 - 5. 기회발전특구 내 산업과 기술에 관한 정보 교류
 - 6. 그 밖에 기회발전특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
 - ③ 제1항에 따른 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・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20조(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·운영) ① 기회발전특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주민자치센터, 도서관, 보육시설, 노인복지시설, 체육시설 등 행정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

공하는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21조(기회발전특구 성과의 평가 등)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 발전특구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회발 전특구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.
 -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종합발전계획의수립 또는 변경에 활용할 수 있다.
 -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기회발전특구별로 행정적 · 재정적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다.
- 제22조(주택공급에 관한 특례) ① 기회발전특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주택법」 제5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공급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 - ②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기우려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주택의 공급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.
- 제23조(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) ① 기회발전특구에서 그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하여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의 장은 시·도지사의 추천으로 관할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야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는 학교의 추천기준은 대통령령으로

정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.
- 제24조(전학·입학 편의 제공)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해당 기 회발전특구 및 인근지역에 있는 초등학교·중등학교에 전학·입학 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 다.
- 제25조(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회발 전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 또는 입주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업무시설, 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 설에 대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0조에 따라 사용허가 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 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, 감면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- 제26조(국유·공유 재산 무상대부 등) ① 국가는 기회발전특구 개발사 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「국유재산법」에도 불구 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기 간은 「국유재산법」 제35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

에 따른다.

- ③ 제2항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이 끝난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그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종전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.
- ④ 기회발전특구 관할 시·도지사는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그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.
- ⑤ 국가는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「물품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그 물품을 양여하거나 무상으 로 대부 또는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- ⑥ 제1항,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양여, 대부, 사용·수익허가의 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7조(부담금 등의 감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회발전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회발전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·점용료·사용료·비용·협력금 등을 해당 근거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.
 - 1. 「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개발부담금
 - 2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의 점용료·사용료

- 3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 시설설치비용
- 4. 「농지법」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
- 5. 「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제11조에 따른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
- 6. 「도시교통정비 촉진법」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
- 7. 「산지관리법」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
- 8. 「수도법」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
- 9. 「자연환경보전법」 제46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
- 10. 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
- 11. 「초지법」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
- 12. 「하수도법」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

제5장 보칙

- 제28조(국회에 대한 보고)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회발전특구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.
- 제29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

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의 업무는 그일부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,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